

의안번호	2213895
의 퇴 인	박해철의원
회 답 일	2025.11.27.
추계번호	25B5835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 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7조의2 (안전한 일터 위원회) 신설	제7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산업안전·보건 업무와 관련되는 주요 정책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안전한 일터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둠(제1항)	의무규정
		위원회는 기본계획 및 주요 정책 심의 사항을 검토하고, 위원회의 심의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		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둠(제3항)	의무규정
		위원회, 전문위원회 및 사무국의 조직·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4항)	의무규정
2	안 제158조의2(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) 신설	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		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,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함(제2항)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7조의2(안전한 일터 위원회) 신설	×	• 미첨부 –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– 본문 참조
2	안 제158조의2(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) 신설		

2. 상세사유

- (안 제7조의2) 개정안은 산업안전·보건 업무와 관련되는 주요 정책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안전한 일터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를 설치·운영하려는 내용이므로, 개정안의 시행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또한, 개정안은 위원회에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 및 주요 정책 심의 사항을 검토하고, 위원회의 심의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,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다만, 개정안은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위원회, 전문위원회 및 사무국의 조직·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기 어려우므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- (안 제158조의2)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「산업안전보건법」을 위반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, 개정안의 시행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개정안은 포상금의 지급,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기 어려우며, 포상금의 규모도 예산의 범위로 유동적이므로 장래에 발생할 추가재정소요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
 - － 또한,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장래에 발생할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위반에 대한 신고건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-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남 희	김신애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남 희	02-6788-3737	nhee@assembly.go.kr